

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9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경로식당 이용료를 현실화 함으로써 원활하고 내실있는 식당 운영으로 식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경로식당 이용료 조정(별표 1) : 2,500원 → 2,800원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, 제37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별표1)

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공고 제2019-5호

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■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[별표 1]

노인종합복지관 부대시설 이용요금(제8조제1항 관련)

시설종류	이용대상	이용료산출	이용료
경로 식당	- 회원 및 일반노인	1식	<u>2,800</u> 원
찜 질 방	- 회원 및 일반노인	1회	1,000원

※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은 무료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			개정안			
■ [별표 1] 노인종합복지관 부대시설 이용요금 (제8조제1항 관련)				■ [별표 1] 노인종합복지관 부대시설 이용요금 (제8조제1항 관련)			
시설 종류	이용대상	이용료 산출	이용료	시설 종류	이용대상	이용료 산출	이용료
경로 식당	- 회원 및 일반노인	1식	2,500원	경로 식당	- 회원 및 일반노인	1식	2,800원
찜질방	- 회원 및 일반노인	1회	1,000원	찜질방	- 회원 및 일반노인	1회	1,000원
※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은 무료				※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은 무료			

관계법령

□ 「노인복지법」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7조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3.13. >

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·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6.7., 2019.3.13.>

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,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1999.28, 2008.2.29, 2010.1.18, 2011.6.7., 2018.3.13.>

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식당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경로식당 이용료를 300원 인상하여 2,800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함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경로식당 이용료 인상으로 인한 예상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 제1호 사유에 해당함.

4. 작성자

- 노인종합복지관 관리계장 김 기 영 (☎480-4851)
- 노인종합복지관 행정8급 백 진 영 (☎480-4853)

소관 실·과		노인종합복지관
입 안 자	관 장	서 철 환
	담 당	김 기 영
	담 당 자	백 진 영 (480-4853)